

제198회 영등포구의회
2016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民 基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77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 공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(안 제11조제1항)

나. 공단 경영평가 기관 (안 제39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(2015.12.15.)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에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. (안 제11조제1항)
- 또한, 2015.12.29. 법 제78조의3(경영지도법인)이 폐지되고 법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설립·운영)가 신설되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 중 “경영지도법인”을 “지방공기업평가원”으로 변경하였으며(안 제39조제2항제1호)
- 그 밖의 인용법령 제명을 「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변경하였고(안 제25조제2항),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정비 하였으며(안 제39조제2항제4호) 자구나 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기업법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2 지방공무원법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